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8
----------	-------

제출년월일 : 2025.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여성동행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시설로, 우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함으로써 위탁사무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6조)
- 나. 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의 명확화(안 제4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5. 4. 17.~5. 7.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2025.5.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조례와**”를 “**조례·규칙과**”로 한다.

제4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그 밖에 센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u>조례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49조(위탁) ①·② (생략)</p> <p>③ <u>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u></p>	<p>제36조(성별영향평가) ① ----- ----- ----- <u>조례·규칙과</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9조(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에 센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김민경
연 락 처	02-3153-8923